

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: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장(개방형직위)

채용분야	일반 사무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
		02.경영·회계·사무	03. 재무·회계	02. 회계	02. 회계·감사
주요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○ 대한적십자사 소속기관의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○ 감독기관 등 감사 대응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○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○ 민원 등 특정사안 조사·처리에 관한 사항 ○ 부패방지시책 및 행동강령, 청렴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○ 직원의식개혁 및 청렴조직문화 관리에 관한 사항 ○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평가에 관한 사항 ○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 ○ 기타 감사와 관련된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				
능력단위	○ (감사) 대한적십자사 소속기관의 감사 실시 및 외부감사 대응 등				
직무 수행내용	○ (감사) 공정한 감사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'Clean 적십자' 구현				
필요지식	○ (감사)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, 대한적십자사 감사운영규정 등				
필요기술	○ (감사) 감사계획 수립 실시 처리 등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능력 등				
직무 수행태도	○ 예방감사 및 내부통제, 기관지원 감사, 소통공정 감사, 자체감사활동 역량 강화 등				
관련 자격사항	○ 공고문 참조				
관련 경력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문 참조 - 석사: 공무원,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감사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- 박사: 공무원,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감사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-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자 -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자 - 공공기관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근무경력자 <p>※ 감사 관련 업무: 감사·수사·법무, 예산·회계, 조사·기획·평가 등의 업무 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(감사기구의 장의 자격) 제1항 제1호 인용)</p>				